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60호 2022. 9. 16(금)

선 람	기관의 장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22-116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남원 도동지구 주차타워 건립사업)----- 1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2-1841호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3
- 남원시 공고 제2022-1849호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10
- 남원시 공고 제2022-1851호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8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22-116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 남원 도통지구 주차타워 건립사업 -

남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인 『남원 도통지구 주차타워 건립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063-620-64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2년 9월 16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남원 도통지구 주차타워 건립사업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도통동 156-3번지 외 1필지
 - 사업의 규모 : 2,46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남원시장(재정과장)
 -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 ~ 2023년 12월 31일
5. 사업비 : 6,500백만원
6.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실음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붙임참조)

〈편입 토지 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시	동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계		2필지			2,840	2,461					
1	남원	도통	156-3	차	2,664	2,382	남원시				
2	남원	도통	156-8	도	176	79	남원시				

남원시 공고 제2022 - 1841호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다양한 주민요구 수렴과 시정홍보, 재난전파, 각종 사회복지 업무 추진 등 행정수요 증가로 인해 이·통장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통장의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 지원 조항 신설
(안 제 7조제3항)
- 이·통장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 지원

3. 입법예고기간 : 2022. 9. 13. ~ 2022. 10. 03.(20일간)**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069), 팩스(063-620-6704), 이메일(tmdwjd12@korea.kr),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행정지원과(☎063-620-60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과장

1. 개정이유

다양한 주민요구 수렴과 시정홍보, 재난전파, 각종 사회복지 업무 추진 등 행정수요 증가로 인해 이·통장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통장의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 지원 조항 신설(안 제 7 조제3항)

- 이·통장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9. . ~ 2022. 9.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첨부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실비보상) ①~② (생 략) <u><신 설></u>	제7조(실비보상) ①~③ (현행과 같음) ③ <u>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u>

[별지 제1호서식]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이·통장 업무수행을 위한 통신비 지원
- 관련조문 :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7조제3항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 전제 : 이·통장 업무수행을 위한 통신비 지원
 - 남원시 이·통장 수 : 502명(2022. 8. 1. 기준)
 - 통신요금 지원액 : 1인당 30,000원
- 비용추계 결과
 - 연간 예산 계획 : 180,720천원
 - ※ 산출근거 : 502명(현원) × 30,000원 × 12개월 = 180,720천원
- 연도별 예산추계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세출	통신요금지원비	180,720	180,720	180,720	180,720	180,720	903,600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공고 제2022-1849호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동부권발전사업 2단계 산업인 ‘허브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허브식품융복합산업화사업단(2015년~2020년)이 해체되었고, 허브밸리의 개발 방향을 관광산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로 조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3. 입법예고기간 : 2022. 9. 14. ~ 2022. 10. 4.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년 10월 4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원예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70 / 남원시 시청로 60, 원예산업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rkdudl314@korea.kr), fax(063-620-6252)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원예산업과 허브육성담당(☎063-620-62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원 예 산업 과 장

1. 폐지이유

동부권발전사업 2단계 산업인 ‘허브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허브식품융복합산업화사업단(2015년~2020년)이 해체되었고, 허브밸리의 개발방향을 관광산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로 조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8. . ~ 9. .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폐지 대상 법규

■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허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남원시허브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허브식물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사업에 관한 사항
2. 허브식물 재배 연구 및 자원화에 관한 사항
3.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를 대표하는 허브관련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 3. 2., 2007. 12. 28., 2013. 9. 27.>

1. 자치행정국장, 경제농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9. 12. 11.>
2. 남원시의회 의원 2인이내
3. 허브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 11인이내
4. 전라북도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교의 교수 5인이내

5. 농업관련단체 대표 4인이내

제4조(위원장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각각의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허브산업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5. 9. 29.>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보존 및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①위원회는 허브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소속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8.>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2 -1851호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공고문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중복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심사기준 추가
- 우리시의 정주여건 및 노후 공동주택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을 넓히고 지원 금액을 상향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항목 확대 (안 제3조)
-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심사를 위한 심사 기준 추가 (안 제4조제3항)
- 보조금의 지원 범위 상향 (안 제6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중복사항 삭제(안 제24조)

3. 입법예고기간 : 2022. 09. 13. ~ 2022. 10. 03.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0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우편번호 : 55738
- (2) 주 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건축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063-620-6719),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직접 방문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건 축 과 장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을 넓히고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우리 시 정주여건 및 노후 공동주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항목 확대 (안 제3조)

-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 추가: 임대주택 추가
- 지원항목 추가: (현행) 15개 세부 항목 규정

→ (변경안) 주거용 건축물 부분을 제외한 공용시설물 전체 부분으로 확대

나.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심사를 위한 심사 기준 추가(안 제4조제3항)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별표 1 신설

다. 보조금의 지원 범위 상향 (안 제6조)

(현행) 3천만원 → (변경안) 1억원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중복사항 삭제(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9. . ~ 10. . (20일간)

2) 비용추계서: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공동주택”으로, “대해”를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주택 공용부
2. 부대시설
3.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4.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제4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를 따른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동주택단지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심사 기준(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점수배점
계		최고 100점
정 량 평 가 (부 서 평 가) 70점	① 준공 후 경과년수(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후 25년 이상 공동주택 20 ▪ 준공 후 20년 이상 공동주택 16 ▪ 준공 후 15년 이상 공동주택 12 ▪ 준공 후 10년 이상 공동주택 8 ▪ 준공 후 10년 미만 공동주택 4
	②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15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12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9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6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하 3
	③ 재난위험등급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등급 이상 15 ▪ C등급 10 ▪ B등급 이하 5
	④ 단지규모(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세대 미만 10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8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6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4 ▪ 1,000세대 이상 2
	⑤ 보조금 지원 경과년수(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지원 10 ▪ 8년 이상 경과 8 ▪ 6년 경과 8년 미만 6 ▪ 4년 경과 6년 미만 4 ▪ 2년 경과 4년 미만 2
정 성 평 가 (심 사 위 원) 30점	⑥ 긴급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 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⑦ 효과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⑧ 필요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 시설 여부 등

※기타 선정기준

1. 신청단지가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평가 다득점순에 따라 지원
2. 동점일 경우 준공후 경과년수, 세대규모, 재난안전, 사업의 적정성순으로 선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사업시행 이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u>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한다)</u> 단지의 주거용 건축물(주거용 건축물과 공동시설물이 일체형일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 부분에 한정한다)을 제외한 부분에 <u>대해</u> 다음 각 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u>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이 노후되어 시설물의 안전과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붕, 옥상, 공동급수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공동출입문의 보수·교체와 외벽도색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 보수 2. 옥외 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 3. 옥외 하수도 보수 및 준설 	<p>제3조(지원대상) ① ----- ----- ----- ----- ----- <u>공동주택</u> ----- ----- ----- ----- ----- <u>대하여</u> ----- ----- ----- ----- ----- <u>서 삭제</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동주택 공용부</u> 2. <u>부대시설</u> 3. <u>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u>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24조(구성 등) ① <u>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u>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u></p> <p>1. <u>법학 또는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u></p> <p>2. <u>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u></p>	<p>② <u>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밖에 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를 따른다.</u></p> <p>제24조(구성 등) <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u>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u></p> <p>3. 「<u>공동주택관리법</u>」 제67조 제2항에 따른 <u>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u></p> <p>4. <u>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 사업의 인가·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임대주택 사업의 인가·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u></p> <p>5. <u>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u></p> <p>⑤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p><삭 제></p>

시 보

현 행	개 정 안
<p>⑥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u><삭 제></u></p>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 관리 지원 대상의 확대 및 보조금 지원 범위의 상향
- 관련 조문 : 안 제3조(지원대상)
안 제4조(지원방법)
안 제6조(보조금의 지원 범위)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 계획: 2,400백만원 [※ 2023년도 전체 예산]
 - 연간 지원대상 공동주택 단지 수: 24개소
 - ※ 추계 산출 근거: 49개소(총 공동주택 단지) ÷ 2
 -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 1억원 이하
 -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1년이 경과한 후 재신청 가능
 - 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백만원)

연도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총비용	12,200	2,400	2,500	2,400	2,500	2,400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12,200	2,400	2,500	2,400	2,500	2,400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건축과장 양근식

남원시 공고 제2022 - 1857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호국보훈수당 도비 증액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보훈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수당 지급액 변경 (안 제3조제3항)

- (현행) 월 8만원 지급 → (변경안) 월 9만원 지급

3. 입법예고기간 : 2022. 9. 14. ~ 2022. 10. 04.(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210), 팩스(063-620-6711), 이메일(ahnwonju@korea.kr),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063-620-62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대상 지원 조례(안) : 붙임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주민복지과장

1. 개정이유

호국보훈수당 도비 증액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보훈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훈수당 지급액 변경 (안 제3조제3항)
 - (현행) 월 8만원 지급 → (변경안) 월 9만원 지급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9. . ~ 2022. 10. .
 - 2) 비용추계서 : 붙임
 - 3) 예비규제심사 :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월 8만원”을 “월 9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지급액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③ 수 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u>지급액은 1인당 월 8만원</u> 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③ --- ----- ----- <u>월 9만원</u> 으로 한다.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국가보훈대상자 지급액 인상
- 관련조문
 -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 제3조제3항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22년 보훈수당 지급액 인상 : 1인 월 8만원 ⇒ 9만원
 - '22년도 보훈수당 도비보조금 증액 : 1인 월 기준 1만원 ⇒ 2만원
 - * 전라북도에서 보훈수당 도비 증액분 반영조치 권고

○ 연도별 예산추계

- '22년도 예산액(증액분) : 163,200원

※ 산출기준 : 시비 증액분 1인 10천원×1,360명×12개월=163,200천원

(단위:천원)

구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대상 인원 (명)	-	1,360	1,330	1,300	1,270	1,240	
보훈수당 시비 증액 예산	780,000	163,200	159,600	156,000	152,400	148,800	

※ 고령으로 인한 보훈대상자 자연 감소(연간 평균 30명 정도) 사항 반영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도비보조금 2만원, 자체세입 7만원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